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30109

민원서류 재증, 본인 외 개봉 금지

1024007377211 2026년04월30일 제작 [접수국:광화문]



보통등기

A1 110 02 03

동서울 광화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통인동)
최호응외719명 귀하
030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신 최호웅 외 719명 귀하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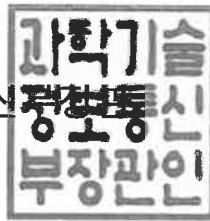
제목 민원(1CA-2603-0755989) 처리결과 안내

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입니다.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CA-2603-0755989)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3. 선생님의 민원내용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4.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진화하고 피해 규모 또한 지속 늘어 통신 사기 범죄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엄중한 분위기를 감안하여 주요 범행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폰 개통 차단 강화를 위해 안면인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나. 안면인증은 민감정보를 활용하는 타 모바일 앱과 마찬가지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설명 및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구한 후 수집·활용되며, 촬영한 얼굴 정보는 개통이 완료되는 즉시 별도 보관 없이 자동으로 삭제하는 등 인증에 활용된 정보를 철저히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 다. 또한 정부는 이통사의 안면인증 시스템 운영 전반 및 이통사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수집·관리하는 이용자 정보에 관여하지 않으며, 안면인증을 위해 수집한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열람하거나 사후적으로도 통신사로부터 관련 생체 정보 일체를 제공받지 않습니다.
 - 라. 과기정통부는 시범 기간 동안 이용자의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대체수단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5.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김명재 주무관(전화: 044-202-6654, 이메일: mjaekim@korea.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1335번)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주무관 김명재 사무관 전결 2026. 4. 28.
김동현

협조자

시행 통신이용제도과-852 (2026. 4. 28.) 접수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3-6층 (어진동) / <http://www.msit.go.kr>

전화번호 044-202-6654 팩스번호 044-202-6041 / mjaekim@korea.kr / 비공개(6)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서

항 목	내 용
제 목	(합동)휴대폰 개통시 안면 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 요구(서명 제출)
민 원 인	최호웅외719명
등 록 일	2026-03-19
접 수 일	2026-03-20
내 용	첨부파일 내용 참조
신청번호	1CA-2603-0755989
유 형	일반민원

닫기